

『대만, ‘특정 향정 및 향료 성분의 라벨링 요구사항’ 초안』 심층분석 보고서

2025. 02.

TBT 통보 여부	통보	HS Code	33, 34
통보국	대만	전년도 수출규모 (천불)	371,142
작성기관	KOTITI시험연구원	문의처	tbt@kotica.or.kr

[목 차]

1. 규제 개요	1
2. 제정 세부내용	3
3. 관련 법령 및 표준	5
붙임. 규제 참고자료	6

1

규제 개요

- (도입 배경 및 목적) 대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국은, 소비자에게 명확한 화장품 성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, ‘특정 향정 및 향료 성분의 라벨링 요구사항’ 규정의 초안을 제정함
- (규제 요지) 대만에化妆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‘특정 향정 및 향료 성분의 라벨링 요구사항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
 - 수출하려는 제품에 포함된 특정 향정 및 향료 성분의 농도를 확인하고, 규정된 농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성분명을 라벨에 명확히 표기

TBT 통보번호	▪ TPKM/555	통보일	▪ 2025년 1월 27일
		고시일	-
규제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특정 에센스 및 향신료 성분에 대한 라벨링 표기 요건(4페이지, 중국어), (3페이지, 영어) ▪ The labeling requirements for specific essence and spice ingredients to be disclosed. 		
규제부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식품의약국; 보건복지부 ▪ Food and Drug Administration;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		
요구사항 유형	▪ 라벨링		
제·개정 상태	▪ 제정 초안		
채택일	-		
의견수렴 마감일	▪ 통보일로부터 60일 (WTO 의견수렴마감일)		
발효일	-		
준수기한	-		

□ (적용대상 및 수출규모)

<p>적용대상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에센셜오일 및 레지노이드, 향수, 화장품 또는 화장품(HS code(s): 33), 비누,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[막대(bar) 모양·케이크 모양·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,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,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(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,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),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·워딩(wadding)·펠트(felt)·부직포(HS code(s): 3401) ▪ ESSENTIAL OILS AND RESINOIDS; PERFUMERY, COSMETIC OR TOILET PREPARATIONS (HS code(s): 33); Soap; organic surface-active products and preparations for use as soap, in the form of bars, cakes, moulded pieces or shapes, whether or not containing soap; organic surface-active products and 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, in the form of liquid or cream and put up for retail sale, whether or not containing soap; paper, wadding, felt and nonwovens, impregnated, coated or covered with soap or detergent (HS code(s): 3401) 		
<p>對발행국 수출액 (전년기준, 천불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371,142 	<p>HS Code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33, 34

2

제정 세부내용

□ 제정 개요

○ 규제 배경

- 2019년 5월 30일, ‘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’에 따라 ‘화장품 외포장, 용기, 라벨 또는 지침의 표시규정’이 제정됨
- 본 규제에서 제시된 규정 초안과 연계하여, 본 규제의 특정 향정 또는 향료 성분 관련 규정 내용을 준수하도록 개정 제안됨 (2025년 1월)*

*WTO 통보문 TPKM/556

□ 제정 내용

표 1. ‘특정 향정 및 향료 성분의 라벨링 요구사항’ 규정 초안 내용

구분	주요 내용
제1조	
-	[입법 근거] - 규정의 근거 법령 명시 · 본 규정은 ‘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(이하 본법이라 칭함)’ 제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제정됨
제2조	
-	[특정 향정 및 향료 성분별 표시 요구사항] - 본 보고서 pp. 4 표 2(첨부 목록)에 기재된 특정 향정 또는 향료 성분이 아래 [농도 기준]을 초과하여 화장품에 포함된 경우, · 해당 성분명을 표시하여야 함 · 단순히 ‘향정’, ‘향료’, ‘Flavor’, ‘Fragrance’, ‘Parfum’, ‘Perfume’, ‘Aroma’ 등으로 표기할 수 없음
-	[농도 기준] (1) 사용 후 행구는 제품 : 사용 농도 0.01% (2) (1)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: 사용 농도 0.001%

표 2. 첨부 목록 : 특정 향정 및 향료 성분

구분	성분명	CAS No.
1	Amyl Cinnamal	122-40-7
2	Benzyl Alcohol	100-51-6
3	Cinnamyl Alcohol	104-54-1
4	Citral (Geranial, Neral)	5392-40-5 / 141-27-5 / 106-26-3
5	Eugenol	97-53-0
6	Hydroxycitronellal	107-75-5
7	Isoeugenol	97-54-1 / 5932-68-3 / 5912-86-7
8	Amylcinnamyl Alcohol	101-85-9
9	Benzyl Salicylate	118-58-1
10	Cinnamal	104-55-2
11	Coumarin	91-64-5
12	Geraniol	106-24-1
13	Anise Alcohol	105-13-5
14	Benzyl Cinnamate	103-41-3
15	Farnesol	4602-84-0
16	Linalool	78-70-6
17	Benzyl Benzoate	120-51-4
18	Citronellol	106-22-9 / 1117-61-9 / 7540-51-4
19	Hexyl Cinnamal	101-86-0
20	Limonene	5989-27-5 / 138-86-3 / 7705-14-8 / 5989-54-8
21	Methyl 2-Octynoate	111-12-6
22	Alpha-Isomethyl Ionone	127-51-5
23	Evernia Prunastri Extract	90028-68-5
24	Evernia Furfuracea Extract	90028-67-4

관련 법령 및 표준

-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
 - 化粧品衛生安全管理法
- 화장품 외포장, 용기, 라벨 또는 지침의 표시규정
 - 化粧品外包装、容器、標籤或仿單之標示規定

규제원문

○ 특정 향정 및 향료 성분의 라벨링 요구사항 규정 초안 총설명

- 化粧品應標示之特定香精或香料成分草案總說明

*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5/TBT/TPKM/25_00947_00_x.pdf

○ 특정 향정 및 향료 성분의 라벨링 요구사항 규정 초안

- The labeling requirements for specific essence and spice ingredients to be disclosed.

*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5/TBT/TPKM/25_00947_00_e.pdf